

서 울 행 정 법 원
제 3 부
[2019구합54146]

사 건 명 : 채무부존재 확인
원 고 : 원고1
전남 완도군 이하 생략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
피 고 : 수협중앙회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B
담당변호사 변호사2
변론 종결 : 2019. 7. 17
판결 선고 : 2019. 9. 6

주 문

1.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표 기재 어선원보험료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어선 ○○호의 소유자이고, 피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(이하 '어선원재해보험법'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라 ○○○○○장관으로부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다

나. 원고는 2008. 7. 2. 어선원재해보험법 제16조 등에 따른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였고, 2008. 7. 경 두 차례에 걸쳐 어선원보험료를 납부한 바 있다(원고가 가입한 위 어선원보험을 이하 '이 사건 어선원보험'이라 한다). 피고는 2009. 경 이후부터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어선원보험료를 부과하였다(별지1 표 기재 어선원보험료를 이하 '이 사건 어선원보험료'라 하고, 그 부과처분을 이하 '이 사건 부과처분'이라 한다)

다. 피고는 어선원보험료 징수과정에서 납부서, 납입고지서, 납입독촉장, 자진납부서 순으로 징수상대방에게 송달한다.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와 관련하여,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정리한 위 각 우편물의 구체적 발송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

라. 피고는 2010. 9. 17. '위와 같은 징수 절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어선원 보험료를 체납하였다.'라는 이유로 원고 소유 어선인 ○○호를 압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제3호증, 을 제2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1)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서를 송달받은 적도 없으므로,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.

2)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어선원보험 계약조회장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8. 12. 31. 자로 이 사건 어선원보험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, 별도의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이 사건 어선원보험 관계가 지속된다는 사실을 피

고측으로부터 안내받은 바도 없다. 따라서 2009년도 이후에도 이 사건 어선원보험 관계가 존속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, 금반언원칙, 신의칙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고, 그 하자가 중대·명백하므로 무효이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3 기재와 같다

다. 판단

1) 먼저 별지2 표 기재 납부서의 송달 내역을 살펴본다.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(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7 두20140 판결 등 참조). 피고 전산시스템상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는 일반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되었고, 별지2 표 '반송 여부'란에도 '확인불가'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도달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, 이 사건 어선원보험료 납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2) 별지2 표 기재 납입고지서 중 2012. 5. 20.자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번호가 기입되어 있어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 그러나 별지2 표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2. 5. 20.자 납입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가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반송되었고, 이러한 경우에는 위 납입고지서의 도달사실을 처분청이 입증해야 하는 데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8977 판결의 취지 참조), 그 도달 사실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

또한 2012. 5. 20.자 납입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납입고지서의 경우, ①피고는 '내부 전산시스템상으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, 실제로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.'라고 주장하고 있으나, 해당 각 납입고지서의 등기우편번호조차 알 수 없어 실제로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, ②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장소로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된 납입독촉장(등기우편번호 있는 것에 한정) 모두

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는데, 실제로 위 각 납입고지서가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발송되었다 하더라도 반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각 납입고지서 역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,

3) 한편 별지2 표 기재 자진납부서는 등기우편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반송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, 실제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.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각 처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, 자진납부서는 어선원재해보험법 제45조 제2항, 제3항에 따른 해당 어선원보험료의 납부 독촉절차의 개시(별지2 표 납입독촉장 발송) 이후 작성·발송된 문서이므로 이를 독촉절차의 선행 절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의 처분서라고 보기는 어렵고, 그 독촉절차에서의 독촉장 등이 부과처분서에 갈음하다고 할 수도 없다(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3누 6782 판결,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6누 17059 판결의 취지 참조)

4)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(대법원 1998. 2. 13. 선고 97누 8977 판결 등 참조)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1

판사2

판사3